



규정 학칙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2/30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1	2012. 02. 21.	· 25차 개정
2	2012. 09. 2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에 의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함
3	2012. 12. 07.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에 대한 규정 반영
4	2013. 02. 28.	· 신설학과, 변경학과 반영 · 학점은행제 구체화
5	2013. 04. 23.	· LINC사업단장 교무위원으로 명시
6	2013. 09. 25.	· 국내외인턴십을 실습학기제로 변경
7	2014. 02. 03.	· 신설학과, 변경학과 반영 · 건축학과 공학인증 반영
8	2014. 08. 19.	·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단 반영 · 부속부설기관 변경 반영
9	2015. 02. 27	· 신설학과, 변경학과 반영 · 학위수여 취소 사항 반영
10	2015. 04. 27	·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신설
11	2016. 02. 15	· 신설학과, 변경학과 반영 · 편입학 이수학점 변경, 부전공,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반영 · NCS기반 교육운영 구체화
12	2016. 05. 23	·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도서관 운영 신설
13	2016. 08. 01	· 편입학 이수학점 변경 · 대학 내 학생 집단활동 운영 대책 반영
14	2017. 02. 24	· 신설학과, 변경학과 반영
15	2017. 05. 29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고시에 따른 명칭 변경 · 3년제 학과 2년제 전과 허용 반영 · LINC사업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단 특별사업기구 통합
16	2017. 12. 04	· WCC사업 선정에 따른 학사제도 유연화 반영
17	2018. 02. 02.	· 신설학과, 변경학과 반영, 직제개편에 따른 대학조직 변경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동원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대학교는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위치) 이 대학교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에 둔다.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이 대학교에 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학사과정(6개 학부, 26개 학과, 2개 전공) 1,618명

학부	학 과	주간	학부	학 과	주간
IT융합 학부	정보전자과 (정보전자전공, 반도체장비전공)	85	사회경영 학부	e-비즈니스과	40
	정보통신과	60		보건의료행정과	94
	스마트앱콘텐츠과	70		문헌정보데이터관리과	40
	의료정보시스템과	55		부서관학과	40
	컴퓨터정보과	60	복지 학부	아동보육복지과	70
	컴퓨터영상디자인과	40		사회복지과	100
	시각정보디자인과	52	호텔관광 학부	관광과	70
건축소방 학부	건축과	60		항공서비스과	75
	실내건축과	60		호텔외식경영과	60
	소방안전관리과	80	호텔조리과	82	
사회경영 학부	세무회계정보과	65	뷰티보건 예체능 학부	뷰티디자인과	80
	부동산관리과	40		보건운동관리과	40
	경영과	60		레저스포츠과	40

② 산업체 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1개 학과) 15명

설치학과	야간
뷰티디자인학과	15

③ 산업체 경력이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8개 학과) 135명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설 치 학 과	야간	설 치 학 과	야간
건축학과	15	사회복지학과	20
실내건축학과	15	문헌정보데이터관리학과	15
보건의료행정학과	20	관광학과	15
아동보육복지학과	15	보건운동관리학과	20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 이 대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11.11.29>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이 2년인 전공은 2년, 수업연한이 3년인 전공은 1년으로 한다.

④ 유니테크사업 반도체장비전공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11.29.>

④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 2학기 이상 다학기제를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7.12.04>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시 교과별 집중수업 이수제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교기념일 : 매년 6월 1일
2. 일요일
3. 법정공휴일

②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은 매 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학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11.29>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전공심화과정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단, 경력없는 심화과정은 재직 경력 제외)

제13조(입학지원) <삭제 2011.11.29>

제14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매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가 공표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 학칙 제15조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5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전형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제15조의2(입학공정관리위원회)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 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29>

제15조의3(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①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위과정 졸업생 및 산업체의 교육만족도 조사
4. 그 밖에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전공심화과정설치학과의 교수, 산업체인사,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산업체 인사 위원은 위원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11.29.]

제15조의4(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① 입학전형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을 위하여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입학허가) ① 전문학사과정 입학허가는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전공심화과정의 입학허가는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6조의2(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1.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4. 그 밖에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자
- [본조신설 2011.11.29]

제17조(이중학적의 금지) 이 대학교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18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이상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1. 1학년 2학기 편입은 10학점 이상 취득자
 2. 2학년 1학기 편입은 32학점 이상 취득자
 3. 2학년 2학기 편입은 54학점 이상 취득자(3년제 전공에 한함)
 4. 3학년 1학기 편입은 72학점 이상 취득자(3년제 전공에 한함)
- ② 편입학은 각 전공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③ 편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전과) ① 교내전과(교내에서 같은 학년의 다른 전공 또는 계열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는 제1학년 2학기 또는 제2학년 1학기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전과인원은 과정별 결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정한다.
- ③ 전과한 자는 전입 전공의 40학점 이상(3년제 60학점 이상) 전공교과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전공은 전과한 자가 전출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을 심의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제14조에 따른 특별전형 및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도 전과할 수 있다. 다만, 특별전형 중 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제외한다.
- ⑤ 삭제<2017.05.29.>
- ⑥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1.11.29>
- ⑦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전입전공의 등록금이 전출전공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불한다.<신설 2011.11.29>

제20조(재입학) ① 이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하였거나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4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없다.

②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전공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2조(휴학)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1.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그 밖에 계속적으로 수학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② 휴학기간은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에 따라 휴학(이하 “일반휴학”이라고 한다)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문의 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계속 수학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라 휴학(이하 “군휴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군휴학자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한 경우에는 수시시험 또는 중간시험으로 해당 학기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⑥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시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제22조의2(복학) ① 휴학(일반휴학, 군휴학)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 시작 3주 이내 까지 복학할 수 있다.

② 휴학한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조기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서를 소속 전공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제적한다.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4주 이상 결석 한 자
 3. 다른 학교에 입학한 자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삭제 2011.11.29>

제6장 교과, 수업 및 NCS기반 교육 운영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기준은 교양교과의 경우에는 10%에서 15%, 전공교과의 경우에는 85%에서 90%로 한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 별도반은 교양교과를 10%의 범위 내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등 전체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실습학기제는 계절제 실습학기제와 학기제 실습학기제로 구분하며 의무대상전공의 학생은 해당교과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5.29>
- ④ 사회봉사활동 및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점인정은 따로 정한다.
- ⑤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실습학기제를 이수한 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⑦ 삭제

제25조의2(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기준은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서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의 특성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현장실습 의무대상전공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실습학기제를 이수한 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3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 ①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편성위원회”라 한다)는 이 학칙 제15조 3의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내에 둔다.

-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전공심화과정의 수요자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4. 그 밖에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편성위원회는 전공심화과정 설치전공의 교수 및 산업체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산업체 인사 위원은 위원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편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공심화과정 설치전공의 학과장으로 한다.
- ⑤ 편성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⑥ 편성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편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29.]

제26조(특별과정운영) ① 이 대학교에는 1년 이내의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특별과정은 이 대학교에 설치된 전공과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특별과정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의2(시간제 등록 과정 운영) ① 이 대학교에는 시간제등록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시간제등록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③ 시간제등록과정의 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10의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
- ④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그 밖에 시간제등록과정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의3(전공심화과정 운영) <삭제 2011.11.29>

제26조의4(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이 대학교에는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계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의5(학점은행제의 운영)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 대학교에서 48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제26조의6(장애학생의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총장이 인정한 장애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장애학생의 학점등록은 학사규정 제14조 2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의7(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운영) ① 공학계열 학부(과) 또는 전공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부(과) 또는 전공은 일반 학위과정과 구분되는 인증 학위과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의8(창의융합부전공 및 융합전공 운영) ①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융합부전공 및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창의융합부전공 및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의9(NCS기반 교육과정) ① 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대학 및 전공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편성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수업연한이 2년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80학점 이상으로 하고,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생은 매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이수 할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다만, 3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최종학기 재학생은 10학점 이상, 최종학기 재입학자는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④ 계절학기는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학기제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2017.05.29>

⑥ 신입생 중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양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학과는 8학점까지, 3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학과는 12학점까지 인정할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해 취득한 학점인정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신설 2011.11.29>

⑦ 매 학기 개설 교과목과 유사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11.29>

제27조의2(전공심화과정의 교과이수단위) ① <삭제 2011.11.29>

- ② 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인정학점 80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③ 전공심화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8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⑤ 제25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7조의3(학점인정) ① 군입대휴학자가 군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 대학교가 개설한 원격강좌를 이수한 때에는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의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② 정부지원 취·창업프로그램(청년취업아카데미 등)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3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③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학점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수업)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수업 개시 전에 따로 정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전공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의2 (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의 3 (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하여야 한다.

- 제28조의 4(수강신청)** ① 학생은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③ 수강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29조(평가지험)** ① 교과목별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NCS 기반 교과목은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수업의 4주이상 결석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 제30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및 실험·실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이수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등급	배점	평점
A ⁺	100-95	4.5
A ^o	94-90	4.0
B ⁺	89-85	3.5
B ^o	84-80	3.0
C ⁺	79-75	2.5
C ^o	74-70	2.0
D ⁺	69-65	1.5
D ^o	64-60	1.0
F	59이하	0
P		계산하지 않음

- ③ 추가시험 성적은 A⁰ 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성적 배점 및 분포는 학사규정시행지침에 따른다.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제31조(진급조건) 상급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는 조건은 따로 정한다.

제32조 (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 학기 평점평균이 1.20 미만인 자는 이를 경고한다.

제34조(졸업) ①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7조 제2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공심화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7조의2제2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제34조의2(명예학위) ① 이 대학교에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로서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또는 이 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학위수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③<삭제 2011.11.29>

제34조의3(수료)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② 전공심화과정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학년 수료 :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80학점을 포함하여 110학점 이상

2. 4학년 수료 :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80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③ 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1.29]

제34조의4(학위취소) 학위를 받은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학위를 받은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교수회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유급) 삭제

제8장 학생활동

제36조(총학생회)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민주적인 자치능력과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에 학생자치기구인 동원대학교 총학생회를 둔다.

② 이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휴학 및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③ 총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신설 2011.11.29>

④ 총학생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11.29>

제37조(학생회비)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학생단체의 조직) 총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자치활동) ①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한다.

1. 학술·기술·예술 및 체육활동
2. 이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의 방재 및 지원활동
3. 지역사회 및 각종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② 총학생회,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이 대학교의 운영에 간섭하거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40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킨다.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 ②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지도를 하는 지도교수는 개별상담을 하고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③ 학생 집단 활동 시 담당 지도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한다.<신설 2016.08.01>

제40조의2(학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총학생회 및 학생단체를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학생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총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에서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
4. 과외 학생활동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신상 및 상담에 필요한 사항
7. 총학생회 간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11.29]

제41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총학생회,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학생활동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간행물 배포) 총학생회,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간행물 배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처벌) <삭제 2011.11.29>

제9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44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제45조(결석) 삭제

제46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이 대학교 학칙 및 규정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3.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거나 받은자
4. 그 밖에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신설 2011.11.29>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47조의2(규정의 제정) 학생 포상 및 징계의 사유 또는 집행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의3(성희롱 방지) ① 총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 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② 총장은 직장 내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성희롱의 예방 및 구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29]

제10장 납입금

제48조(등록금납부)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 또는 실습에 사용되는 실제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납부할 수 있다.

③ 납부한 수업료 등 납입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④ 유니테크사업 반도체장비전공 등록금 납부는 따로 정한다.

제48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최소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5>

1. 교직원 : 3명

2. 삭제

3. 학생 : 3명

4. 관련전문가 : 1명

③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각 구성단위 가운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11.29>

제48조의3(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한다)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9조의2(수강신청) 삭제

제11장 장학금

제50조(장학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생활이 곤란한 자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11.29>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제12장 교수회

제51조(구성) 이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제52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졸업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11.29>

제13장 교무위원회

제53조(교무위원회) 이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54조(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교무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단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의 교수를 위원으로 임명 할 수 있다.<개정2018.02.02>

② 교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부위원장을 둔다.

③ 교무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11.29>

제54조의2(교무위원회의 심의)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발전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의 수립
2. 전공 구조조정 및 학생 정원조정
3. 전공·계열의 기본운영계획의 심의 및 조정
4.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1.29]

제14장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학칙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20/30

제54조의3(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이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1.11.29]

제54조의4(평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의위원회는 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5명
2. 직원 : 4명
3. 학생 : 1명
4.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1명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1.29]

제54조의5(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11.29]

제54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4조의7(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1.29]

제54조의8(의결)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11.29]

제54조의9(규정의 제정) 평의원 위촉 및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29]

제15장 직제

제55조(교직원) ① 이 대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두며,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원, 행정직원, 학부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행정직원은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④ 삭제

제56조(대학조직) ① 이 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취업처, 산학협력처, 입학홍보처, 기획처, 사무처, 교목실, 경영지원실을 둔다.

② 각 처와 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처와 실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6조의2 (학부·전공·학과) ① 제4조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에 6개 학부 26개 학과(2개 전공),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9개 학과를 둔다.

② 각 학부 및 학과(전공)에는 학부장 및 학과장을 둔다.

제56조의3 (산학협력단) ① 이 대학교에는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이 겸하거나,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또는 행정직원으로 보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하고, 별도 회계로 운영한다.

④ 산학협력단에는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 산업기술연구소를 둔다.

	규정 학칙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22/30

[본조신설 2011.11.29]

제56조의4 (특별사업기구) 이 대학교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 사업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2017.05.29>

제56조의5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단) <삭제2017.05.29>

제16장 부속기관

제57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 이 대학교에는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

② 부속 및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의2(평생교육원) ① 이 대학교에는 일반 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29.]

제57조의3 (도서관 운영)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학도서관 운영사항
2.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 훈련시간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

제17장 보칙

제58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 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

	규정 학칙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23/30

한다.

제58조의2(학칙안의 공고 등) ①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학칙의 제·개정안(이하 “학칙안”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학칙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9][시행일 2012.1.21]

제58조의3(학칙안의 심의) 학칙안은 제58조의2 제2항의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한다.[본조신설 2011.11.29]

제58조의4(학칙안의 재의 및 공포) ① 대학평의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학칙안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이송한다.

② 이송된 학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학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학칙안은 학칙으로 확정된다.

④ 총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거나 공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칙안은 학칙으로 확정된다.

⑤ 총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학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9]

제59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0조 (정보화책임관 지정 운영) ① 대통령 훈령 제73호(1998. 9. 11)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전산센터장으로 한다.

제61조(산학협력단)<삭제 2011.11.29>

제62조(자체평가) ① 이 대학교는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의 점검 및 평가를 통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2조의 2(대학구조조정) ① 이 대학교는 전공의 경쟁력 제고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구조조정 운영의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3조(교원특별채용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특별채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개인적 사유로 퇴직한 교원을 퇴직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교원이 학기 중에 사망하여 결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교원특별채용위원회(이하 “특별채용위원회”라 한다)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다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1.11.29]

제64조(교원특별채용위원회의 운영) ① 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거나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특별채용 대상자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특별채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④ 특별채용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특별채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1.11.29]

제65조(교원의 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법인정관 제39조

	규정 학칙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25/30

의2, 제39조의4에 따라 심사한다.

② 재임용심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29]

제66조(명예교수)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교수를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교수로 추대하기 위한 세부조건은 따로 정한다.

③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총장은 명예교수가 전공분야에 관하여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9.]

제67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에 의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9.25.]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동원공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동원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문예편집과 및 관광산업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문예편집과는 출판미디어과, 관광산업과는 관광과 소속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8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전자계산과 및 정보검색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자계산과는 컴퓨터정보과, 정보검색과는 인터넷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사무자동화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e-비즈니스과 소속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전자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디지털정보전자과 소속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5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건축설비과, 산업경영과, 인터넷정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건축설비과는 빌딩설비디자인과, 산업경영과는 테크노경영과, 인터넷정보과는 모바일컨텐츠과 소속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5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빌딩설비디자인과, 테크노경영과, 디지털산업디자인과, 문헌정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빌딩설비디자인과는 소방안전관리과, 테크노경영과는 경영과, 디지털산업디자인과는 산업디자인과, 문헌정보과는 교육서비스문헌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디지털정보전자과, 출판미디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디지털정보전자과는 정보전자과, 출판미디어과는 광고편집과 소속으로 보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모바일컨텐츠과, 관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중 모바일컨텐츠과는 모바일인터넷과, 관광과는 항공관광과 소속으로 보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디자인과, 교육서비스문헌정보과, 항공관광과, 사회복지계열, 관광과, 레저스포츠과, 휘트니스건강관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중 산업디자인과는 시각디자인과, 교육서비스문헌정보과는 복지계열 아동문헌정보전공, 항공관광과는 항공서비스전공, 사회복지계열은 복지계열 아동복지전공, 복지계열 사회복지전공, 관광과는 관광전공, 레저스포츠과는 레저스포츠전공, 휘트니스건강관리과는 휘트니스건강관리전공 소속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모바일인터넷과, 복지계열 아동문헌정보전공, 관광계열 항공서비스전공, 관광계열 관광전공, 체육계열 레저스포츠전공, 체육계열 휘트니스건강관리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중 모바일인터넷과는 인터넷정보과, 복지계열 아동문헌정보전공은 복지계열 아동문헌정보과, 관광계열 항공서비스전공은 항공서비스과, 관광계열 관광전공은 관광과, 체육계열 레저스포츠전공은 레저스포츠과, 체육계열 휘트니스건강관리전공은 휘트니스건강관리과 소속으로 본다.

부칙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페이지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복지계열 아동문헌정보과, 복지계열, 보건의료정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중 복지계열 아동문헌정보과는 아동문헌정보과, 복지계열 아동복지전공은 아동보육복지과, 복지계열 사회복지전공은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정보과는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본다.
3.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③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아동복지과, 피부미용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중 아동복지과는 아동보육복지과, 피부미용과는 뷰티디자인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11.29 부터 시행한다. 다만, 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1일부터, 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동원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동원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3.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학칙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학칙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규정	문서번호	TWR-A101
		제정일자	1996. 03. 01.
	학칙	개정일자	2018. 02. 02.
		개정번호	17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학 위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원대학교
총 장

학교법인
동원학원 이사장

학위등록번호 : 동원대-0000-0000

학 위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OO학과 OO학사

년 월 일

동원대학교

총 장

학교법인

동원학원 이사장

학위등록번호 : 동원대-0000-0000

[별지 제1-3호 서식]학점은행제 학위증서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전 공 :

위 사람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2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원 대 학 교 총 장
(2 년 제)

학위등록번호 : 동원대-학점○○○○-○○○○

[별지 제2호 서식]전문학사 수료증서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원 대 학 교 총 장
(2 년 제)

[별표 1]

① 전문학사과정 학위구분

학부	학 과	종별	학부	학 과	종별
IT융합 학부	정보전자과 (정보전자전공, 반도체장비전공)	공학	사회경영 학부	e-비즈니스과	인문사회
	정보통신과	공학		보건의료행정과	인문사회
	스마트앱콘텐츠과	공학		문헌정보데이터관리과	인문사회
	의료정보시스템과	공학	복지 학부	부서관학과	인문사회
	컴퓨터정보과	공학		아동보육복지과	인문사회
	컴퓨터영상디자인과	공학	호텔관광 학부	사회복지과	인문사회
	시각정보디자인과	공학		관광과	인문사회
건축소방 학부	건축과	공학		항공서비스과	인문사회
	실내건축과	공학		호텔외식경영과	인문사회
	소방안전관리과	공학	호텔조리과	자연과학	
사회경영 학부	세무회계정보과	인문사회	뷰티보건 예체능 학부	뷰티디자인과	자연과학
	부동산관리과	인문사회		보건운동관리과	자연과학
	경영과	인문사회		레저스포츠과	예체능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구분

설 치 학 과	종별	설 치 학 과	종별
건축학과	건축	문헌정보데이터관리학과	문헌정보
실내건축학과	실내건축	관광학과	관광
보건의료행정학과	보건행정	뷰티디자인학과	미용
아동보육복지학과	아동복지	보건운동관리학과	보건운동건강관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작성자	조영태	확인자	교무처장 김남규
-----	-----	-----	----------